

도민이 중심
실패가능 의회

2024. 12. 11.(수)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1
----------	-----

2024. 12. 11.(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4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급 대상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축소(안 제8조)
- 지급 방법 변경(안 제9조)

○ 지급 제외 기준 변경 및 제한 기간 축소(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충북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요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어가가 공익수당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빠른 수당의 지급을 위해 지급 방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요건의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과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을 위한 지급방법을 적절히 정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자 확대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확대된 수혜자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익수당 지연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공익수당의 신속 집행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4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발 의 자 :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 대상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축소(안 제8조)
- 지급 방법 변경(안 제9조)
- 지급 제외 기준 변경 및 제한 기간 축소(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0.
- 협 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 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지급대상) 제2항제2호제1호 및 제2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군 상황을 반영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급제외)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3. 신청 전(前) 1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급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u>3년</u>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p> <p>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u>3년</u>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p> <p>③·④ (생략)</p> <p>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p> <p>①·② (생략)</p> <p>③ <u>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u></p>	<p>제8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u>1년</u>-----</p> <p>-----</p> <p>-----</p> <p>2. -----<u>1년</u>-----</p> <p>-----</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시·군 상황을 반영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u></p>

다. 다만,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가

2. (생략)

3. 신청 전(前)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4. 신청 전(前)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제외) -----
-----.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현행과 같음)

3. --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삭 제>

관련법령 발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 마. (생략)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공익수당 지급조건 및 제외조건 완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 등(조례안 제8조, 제11조)

3. 관련조문

- 안 제8조(지급대상)
- 안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안 제11조(지급제외)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요예산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7.2억원(도비)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세 입		222,000	51,000	54,000	57,000	60,000
세 출		222,000	51,000	54,000	57,000	60,000
기존 사업비		220,200	51,000	53,700	56,400	59,100
추가 사업비		1,800	-	300	600	900
재원 조달		222,000	51,000	54,000	57,000	60,000
도비	소 계	88,800	20,400	21,600	22,800	24,000
	기존 사업비	88,080	20,400	21,480	22,560	23,640
	추가 사업비	720	-	120	240	360
시군비	소 계	133,200	30,600	32,400	34,200	36,000
	기존 사업비	132,120	30,600	32,220	33,840	35,460
	추가 사업비	1,080	-	180	360	54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